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Disabled Go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disabled Go. Since Go uses brains unlike other physical exercises, a method different from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disabled players based on physical exercise needs to be applied. For this purpose,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of Go competitions and player training and education need to be reflected. Sinc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sabled Go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therefore there is no official classification standard for Go only, the current regulations of disabled chess apply mutatis mutandis. Although chess is a board game that uses brains like Go, the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games, so it is insufficient to continue to apply it to Go.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and the current regulations, etc., and consider which characteristics of Go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gul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isabled Go associations will be formed in various countries and an international disability classification standard for Baduk will be established with their agreement. Go is a strong sport in East Asia, especially in Korea, China, and Japan, so unlike Western chess, this region has no choice but to lead the association and establish various standards. Through this, we hope that more domestic and foreign Go competitions will be held for the disabled, so that Go can continually participate in the Asian Para Games in the future.

Keywords : Disability Go, Classification, Paralympic, Asian Para games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Deaflympic

장애인 바둑 등급분류에 관한 일 고찰

남치형,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서론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2023년)에 바둑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바둑은 아직 올림픽 종목이 된 적은 없고, 중국이 개최국이었던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에 선을 보였고,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안패러게임 참가가 두 번째이다. 한편 바둑의 국제 장애인 스포츠 이벤트 참가는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이 처음이었다. 어떤 종목이든 처음으로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게 되면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처음으로 정하게 됨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88년 응씨배가 처음으로 개최되던 당시 계가룰과 덤의 크기, 흑백을 정하는 방법, 시간 사용규칙 등 여러 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바둑이 처음으로 다른 스포츠 종목들과 함께 국제경기를 치르게 되면 그에 따른 규정들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등급분류에 관해 논의하려 한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바둑이 체스, 상치(象棋, 중국장기)와 함께 최초로 정식종목으로 참가하게 된 만큼 스포츠로서의 바둑에 어떤 세부 종목이 있어야 하는지, 한중일 이외의 나라들이 참가하는 데 있어 계가나 덤 등의 반상 규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 개최국 중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중국규칙을 사용하고 남자단체(5인), 여자단체(3인), 혼성 페어의 세 종목이 치러졌다. 역시 중국의 도시인 항저우에서 치러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규칙은 전과 동일하게 중국규칙을 사용하였고, 혼성페어 대신 남자개인전이 치러졌다. 거의 모든 프로기전에서 하루 1대국이 치러지는 것과 달리 하루 2회 대국

을 하고, 남자개인전과 단체전이 연달아 치러지는 등 선수들의 체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도핑검사를 하는 등 스포츠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이미 비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바둑경기를 치른 만큼 항저우 패러게임에서도 중국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한 비록 공지가 늦어져 선수선발 및 훈련 등에 있어 혼선을 빚기는 했으나, 어떤 종목은 치를 것인지, 단체전의 승부는 어떻게 가리는지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본 논문의 주제인 등급분류 역시 개최국이 정해놓은 대로 체스의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절단장애, 휠체어장애, 척수장애, 기타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등급분류란, 경기 종목별로 장애인 선수들의 참가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일반스포츠에서 체급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경쟁을 하듯이,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유형과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장애로 제한된 신체의 기능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 선수들 간에 경기가 벌어질 수 있도록 선수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즉, 등급분류의 목적은 한 마디로 ‘공정한 경쟁’이다.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급분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여기에는 각 경기에 있어 누가, 어떻게 등급분류를 하는지, 분류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등급분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장애 정도가 해당 경기의 수행능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정한다. 등급분류는 경기종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진찰을 통하여 신체적 기능을 평가하는 의학적 검사(Medical Classification), 각 경기에 필요한 기능을 평가하는 기능적 검사(Functional Classification), 그리고 경기 중 관찰(Observation during competition)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분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 신체운동 종목들만 참가하던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바둑과 같이 새로이 진입하는 종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따른다. 바둑은 두뇌를 사용하기는 경기로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의학적/기능적 장애여부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체운동의 경우에도 단순 의학

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분류의 문제점이 인식되어 현재에는 각 종목 특성에 맞게 보다 기능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바둑은 아직 국제장애인바둑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바둑 전문협회들의 대회 운영 및 선수 교육의 경험이 반영된 바둑만의 정식 등급분류기준이 없어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 게임에서는 체스의 규정을 준용하였는데, 체스는 바둑과 같은 두뇌를 사용하는 보드게임임에도 신체운동의 최소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계속 준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둑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바둑 등급분류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한다. 먼저 패럴림픽과 패러게임 등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 등급분류가 도입된 배경과 발전 과정 역시 간략하게 알아본다. 다음으로 바둑과 유사한 점이 많은 체스와 브릿지, e스포츠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항저우 아시안패러 게임에서 바둑과 함께 종목으로 채택된 체스의 등급분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후 장애인체육의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체스 등급분류기준을 바둑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바둑을 위해 어떠한 등급분류기준이 만들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본론

1. 패럴림픽과 등급분류

1.1. 패럴림픽의 간략한 역사

패럴림픽의 정식 명칭은 국제 스토크 맨데빌 경기대회(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Games for the Paralysed)로, 1948년 휠체어 스포츠를 창

시한 영국의 신체장애자 의료센터가 위치한 도시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척수장애를 당한 전역 군인들의 재활 수단으로 운동 요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1948년 하지 마비자 26명을 모아 경기를 가진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52년 네덜란드의 양궁팀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국제경기대회로 발전하였다.

그 후 절단자 및 장애인경기연맹·뇌성마비인경기연맹·시각장애인연맹 등 장애 유형별로 국제기구가 설립됐으며, 이를 총괄하는 장애인 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조직되었다. 이후 매년 7월 런던에서 대회를 개최해 오다가 1960년 제17회 로마 하계올림픽 때부터 처음으로 올림픽이 끝난 뒤 바로 패럴림픽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장소와 경기장에서 동등하게 개최되었다.

1972년 제4회 하이델베르크대회 때부터는 참가범위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1976년에는 스웨덴 외른셀스비크에서 제1회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열렸으며, 이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하계와 동계대회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는 올림픽이 폐막한 후 1달 정도 기간 내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하고 있다. 1989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가 탄생했고, IPC는 CC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¹⁾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패럴림픽의 참가범위는 청각장애와 발달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패럴림픽에 출전하지 않는 대신, 청각장애인은 데플림픽에, 발달 장애인은 스페셜올

1) [네이버 지식백과] 패럴림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림픽에 주로 출전한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휘를 받는다.

- 국제뇌성마비인경기협회(Cerebral Palsy International Sports&Recreation Association, CP-ISRA)
- 국제장애인경기협회(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ISOD)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nteran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 IBSA)
- 휠체어및절단장애인경기연맹(Interantional Wheelchair&Amputee Sports Federation, IWAS)

위의 기구들과 함께 IPC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장애 항목을 수립하였다.

근력 손상: 이 항목은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힘이 감소된 장애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손발의 근육, 신체의 일부 근육 또는 신체의 절반 이상의 근육을 의미한다. 예) 척추부상으로 인한 척추 피열 또는 소아마비.

운동 수동 범위의 손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절의 체계적인 운동 범위가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관절염과 같은 심각한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지의 손실 및 결핍: 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전체 혹은 부분적인 뼈나 관절의 부재 및 선천성 사지 결핍

다리 길이의 차이: 선천성 및 외상으로 인한 한쪽 다리의 중요한 뼈의 단축.

저신장: 근골격의 뼈 및 연골 부족으로 인한 팔 과 몸통의 단축 및 짧은 다리 길이로 인한 선키의 단축.

긴장과도: 긴장과도는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이 증가되고 근육의 이완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상이나 병 또는 중추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다. 예) 뇌성마비

운동실조: 운동실조는 근육 운동 조절의 손상을 말한다. 예) 뇌성마비, 프리드리히 운동 실조증

아세토시스: 아세토시스는 일반적으로 불균형, 무의식의 움직임 및 균형

잡힌 자세 유지의 어려움의 특징을 지닌다. 예) 뇌성마비

시각장애: 시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부분적인 시야, 즉 법적으로 장님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한 상태에서부터 완전한 장님의 범위로 나뉠 수 있다.

지적장애: 지적 장애에 포함되는 선수들은 지적 기능의 심한 손상 및 연관된 적응 행동의 제한을 가진다.2)

IPC는 주로 시각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관장하지만 최근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패럴림픽에 추가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선수들을 위한 시력 가이드가 선수와 함께 한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년부터는 이러한 시력 가이드도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한편, 패럴림픽은 하계올림픽으로 시작하였으나 1976년부터 하계와 동계 패럴림픽이 2년의 차이를 두고 열리며 각각의 주요종목은 다음과 같다.

- 하계패럴림픽: 골볼, 뇌성마비 축구,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시각장애인 축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좌식 배구, 탁구, 패러카누, 패러트라이애슬론,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등
- 동계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슬레지 하키, 알파인 스키, 휠체어컬링, 스노보드 등

또한, 아시안패러게임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패러게임이 제1회 대회였고, 2022 항저우 패러게임은 제4회다. 아시안패러게임 이전에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가 불규칙적으로 열렸으나, 제9회인 2006년 쿠알라룸푸르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아시안패러게임으로 새롭게 출범되었다. 참고로 동계아시안패러게임은 2017년 삿포로대회가 유일하다. 아시안패러게임의 종목은 대체로 패럴림픽의 종목들을 따르지만, 일반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에 비해 좀 더 종목 선택의 폭

2) 위키백과, 패럴림픽.

이 넓고 다양한 것처럼 장애인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안패러게임이 패럴림픽과 비교할 때 참가종목에 있어 더 다양하다. 장애인바둑과 장애인체스가 항저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다.

1.2. 등급분류의 도입 배경과 과정

장애인스포츠에서 등급분류는 선수들의 신체적인 운동기능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선수들을 분류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수가 가진 장애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상지절단이나 결손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같은 카테고리에서 하지 기능만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의 경우라면 시각기능으로 선수들을 구분하여 경기를 치르도록 한다. 단, 스포츠등급은 각 국가들이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달라 국내에서는 장애등급을 받더라도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에는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³⁾.

이처럼 장애인선수들의 경우 경기력 향상만큼이나 등급분류심사도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등급을 부여받느냐가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⁴⁾.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등급분류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지난 2010년 광저우패러게임 육상부문에서는 선수의 등급 재조정으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회 도중 등급변경, 등급미달, 재조정 등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등급분류와 관련한 사건들이 이어졌다⁵⁾. 이에 지난 2017년에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급분류사 운영 도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⁶⁾. 또,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선수들이 ‘국제등급분류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3) “공정한 경쟁을 위해 평등한 조건을 갖추다 ‘스포츠 등급분류’,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2023.03.20.

4) “장애인AG 첫 관문 등급분류심사 긴장감 역력”, 에이블뉴스, 2018.10.04.

5) “‘국제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 예산 확대 시급”, 에이블뉴스, 2022.10.14.

6) “장애인체육회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 필요”, 에이블뉴스, 2017.10.18.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 2023년 4월, 개별종목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장애인태권도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로 국제등급분류심사를 받았고, 이로써 당해 10월의 항저우 패러게임과 2024년 파리패럴림픽까지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7). 이처럼 등급분류는 장애인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IPC는 아프리카와 같이 등급분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는 등급분류사를 파견해서 등급분류를 실시하기도 한다8).

현재 20개 종목에 27명의 국제등급분류사가 있는 우리나라9)와 달리 일본은 오랫동안 등급분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왔다. 육상, 수영과 같이 많은 장애유형이 경기에 참여하는 종목의 경우 많은 수의 등급분류사를 양성하고, 국내외 경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자국에서 부여받은 등급이 국제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재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선수들의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10). 또한, 등급분류는 엘리트선수들을 지원하는 의미에 더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에 맞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된다.

등급분류는 패럴림픽대회의 시초인 스토크맨드빌(Stoke Madeville) 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까지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분류를 부여하는 의학적 분류(Medical Classification)체계를 사용하였다. 이후 IPC에서 각 종목의 이벤트 수를 축소하고 각 유형을 기능별로 포괄하는 기능적 등급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를 19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림픽대회부터 채택하였다11). 의학적 분류란 낮은 손상과 높은 손상과 같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장애인들을 구분하는 것이며, 따라서 같은 종목 내에서도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굉장

7) “국내서 첫 시행한 ‘장애인 스포츠 국제등급분류심사’는?”, 무카스미디어, 2023.04.20.
 8)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말라위에서 등급분류 추진”,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블로그, 2022.12.15.
 9) 각주 3의 기사.
 10) 김민창, 홍석만, 한민규, 앞의 논문.
 11) 한민규, 『장애인스포츠론』, 대한미디어, 2018.

히 많은 세부 이벤트가 생긴다. 이와는 달리 기능적 분류란, 각 경기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제도다. 탁구를 예로 들어 보면, 양팔 기능이 정상인 척수 손상인이라도 몸통기능은 정상이어서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좌우측으로 팔을 마음껏 뻗으면서 탁구를 치는 선수와 몸통을 가누지 못해 휠체어에 몸을 고정시킨 자세에서 탁구를 치는 선수가 같은 등급으로 시합을 한다면 경기결과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선수는 등급분류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¹²⁾. 따라서, 장애의 유형이 무엇이든 양팔만 사용 가능한 등급, 혹은 양팔과 허리까지 사용 가능한 등급 등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등급분류이다.

하지만 경기력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 분류가 도입된 이후에도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PC는 2007년 스포츠과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등급분류코드를 마련한다. 이에 더하여 IPC는 2015년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이렇게 3개의 영역의 특징과 경기 종목별 특징을 고려한 수정된 등급분류시스템을 내놓았다. 증거기반분류시스템(Evidence-Based Classification)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선수들의 운동기능과 경기 중 나타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다양한 요인에서의 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새로운 등급분류시스템이다¹³⁾.

정리하자면, 등급분류는 장애인 선수들이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선수들의 신체적인 운동기능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선수들을 분류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급분류는 초기 단계인 의학적 분류에서 기능적 분류를 거쳐 현재의 증거기반 분류로 계속 진화 발전을 해 왔다. 이처럼 등급분류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여러 차례 수정과 개선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며 바둑과 같이 새롭게 포함된 종목의 경우, 특히 신체운동이 아닌 두뇌스포츠 종목의 경우 이에 적합한 등급분류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12) 나은우,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한 첫 관문”, <스포츠과학>,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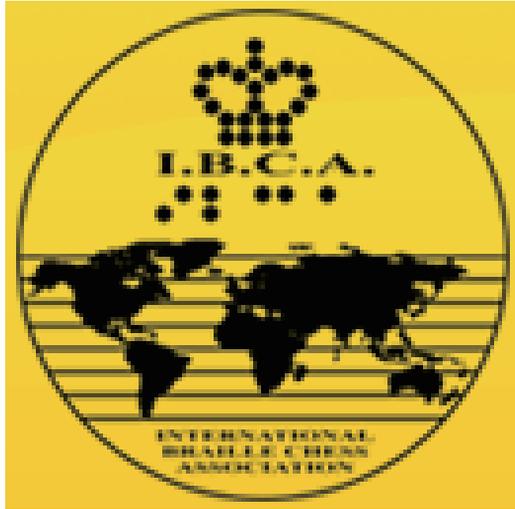
13) 김민창, 홍석만, 한민규, 앞의 논문.

2. 장애인 체스와 등급분류

2.1. 장애인 체스의 발전과정

체스는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스포츠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시범종목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수에 밀려 실패한 후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모았던 2024년 파리올림픽에도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파리올림픽 참가에 있어 체스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e스포츠, 당구 등도 탈락했다. 대신 IOC가 새로이 시작한 e스포츠 시리즈에서는 체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IOC의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9가지 종목의 가상 게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대회였던 2023싱가폴e스포츠 시리즈에서는 올림픽 종목인 7개 외에 체스와 모터스포츠가 포함되었고, 체스는 체스닷컴(chess.com)을 통해 진행하였다.

아시안게임에서 체스는 지난해(2023년) 제29회 항저우아시안게임과 제4회 항저우패러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비장애의 경우 이미 14년 전인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이 정식종목이 된 것과 비교되는데, 바둑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고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종목에 대해 유연한 것이 그 이유라 생각된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체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특히 마인드스포츠로 분류되는 e스포츠 종목들의 채택이 눈길을 끌었다. (롤, 피파온라인4, 도타2, 몽삼국2,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파이터5, 펜타스톱 등 7개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바둑과 체스 이외의 보드게임으로 중국의 샹치가 포함되었고, 카드게임인 브릿지도 추가되었다. 브릿지는 한국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게임이지만 서구에서는 체스보다도 빠른 1991년에 IOC로부터 스포츠로 인정받았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하였으며, 아시안게임에서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및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



국제점자체스협회(IBCА)로고

비록 아시안게임에 있어서는 바둑보다도 늦게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장애인 체스 분야의 발전은 바둑보다 훨씬 빨랐다. 장애인 체스 분야 중 가장 먼저 조직을 갖춘 것은 국제 점자체스협회(International Braille Chess Association, IBCA)로 1951년에 본인이 시각장애인 체스선수였던 레지날드 본햄(Reginald Walter Bonham)에 의해 시작되었고, 1958년에 첫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기구가 되었다. 현재 IBCA에는 5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맹되어 있으며, 국제체스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Échecs, FIDE)과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 IBSF)에 소속되어 시각장애인 체스올림픽야드(Blind Chess Olympiad)와 세계시각장애인 체스챔피언십(Blind World Chess Championship)을 개최한다¹⁴⁾. 시각장애인 체스는 아래 사진과 같이 기물을 꽂을 수 있는 보드에서 두어지며, 선수들은 머리 부분이 다르게 제작되어 구분이 가능한 기물들을 손으로 만져서 형세를 읽는다.

14) Wikipedia, International Braille Chess Association.



<https://www.chessbaron.co.uk/category/chess-for-blind/>

시각장애 이외의 신체장애인 체스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패러게임(ASEAN Para Games)에 처음으로 출전하였다. 당시 체스 종목에는 총 5개국 이 참가하여 2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렀고, 인도네시아가 금메달 14개로 종합1위를 차지했다¹⁵⁾. 또한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직전인 2023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패러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5개국 이 3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금메달 15개를 획득한 인도네시아가 1위, 13개를 획득한 필리핀이 2위, 8개를 획득한 베트남이 3위에 올랐다¹⁶⁾.

이러한 장애인 체스대회는 국제장애인체스협회(International Physical Disabled Chess Association, IPCA)의 관할이다. 1992년 체코와 폴란드의 지체장애 체스 선수들의 주도로 설립된 IPCA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상당히 낮은 근골격계 효율을 가지고 있고 걷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체스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며 현재 전세계 20개국 이상의 장애인 체스 연맹이 속

15) Wikipedia, Chess at the 2017 ASEAN Para Games.

16) Wikipedia, Chess at the 2023 ASEAN Para Games.

해 있다¹⁷⁾. 작년(2023년) 초에는 제1회 FIDE장애인체스올림피아드(FIDE Chess Olympia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동이 어려운 신체장애인들을 배려한 온라인 세계대회를 2020년부터 열어오다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대회를 연 것이다.



<https://ipcachess.org/gallery/?gallery=2nd-world-junior-chess-championship-for-the-disabled-2018>

한편, 청각장애인들만의 체스 조직도 존재한다. 앞서 패럴림픽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럴림픽은 기본적으로 신체장애와 시각장애만을 포함하고 지적 장애인은 스페셜올림픽, 청각장애인은 데플림픽을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데플림픽은 농아인(deaf)과 올림픽의 합성어로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이며, 하계대회와 동계대회가 모두 진행되는데, 첫 하계대회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첫 동계대회는 1949년 오스트리아 시필드에서 개최되었다. 하계 데플림픽에는 축구, 농구, 육상 배드민턴, 골프, 사격, 핸드볼, 유도, 배구,

17) <https://ipcachess.org/about-us/>

레슬링, 탁구, 수영 등 일반올림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경기들과 더불어 오리엔티어링과 볼링 경기가 진행된다. 동계 데플림픽에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등과 함께 체스가 정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¹⁸⁾. 데플림픽을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체스대회는 국제농아인체스위원회(International Chess Committee of the Deaf, ICCD)의 관할이다. 현재 ICCD에는 52개국¹⁹⁾이 가입되어 있으며, FIDE에서 개최하는 세계농아인체스올림픽어드 등도 함께 개최한다.

2.2. 장애인체스 등급분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스의 경우 이미 국제점자체스연맹, 국제농아인체스위원회, 국제장애인체스협회 등이 설립되어 있고, 여러 국제 스포츠이벤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아시안패러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서는 APC Chess Rules (Asian Paralympic Committee Chess Classification Rules)이 새로이 제정되었다²⁰⁾. 이 룰은 국제뇌성마비인경기협회(CP-ISRA), 국제장애인경기협회(ISOD),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휠체어및절단장애인경기연맹(IWAS)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시각장애는 CHB1, CHB2, CHB3의 세 단계, 그리고 기타 신체장애는 CHPI로 분류되었다²¹⁾. 시각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참가하는 세부종목이 달라지지만 그 밖의 신체장애의 경우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²²⁾, B1은 명암인식이 가능 또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어느 방향이나 어느 거리에서든지 손의 형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전맹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고, B2는 손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18)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식블로그, 데플림픽.

19) <https://chessdeaf.org/member-federation/>

20) Asian Paralympic Committee Chess Classification System

21) CH는 체스(Chees), B는 시각장애(Blind), P는 신체장애(Physical)을 의미한다.

22) IBSA Medical Procedures, IBSA Classification

시력이 2/60 이하 이거나 단안 시야가 5도 미만인 경우, B3는 2/60 이상에서 6/60 사이, 또는 단안 시야가 5도 이상 20도 미만의 약시를 말한다. 모든 등급분류는 교정시력에 준하고, 오직 공인된 IBSA 국제 등급분류사의 감독 하에 두 번의 국제 등급 분류를 실시한 안과의사만이 분류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체장애²³⁾는 근력손실(Loss of muscle power), 근육강직(Hypertonia), 왜소증(Short stature), 절단장애(Loss of limb or limb deficiency), 운동실조(Ataxia), 무정위 운동증(Athetosis) 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이 불편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는 영구적인 손상이어야 하고, 공인된 등급분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또, 신체장애는 전맹이나 약시와 같은 구분 없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통과하면 되는 “최소장애” 기준을 적용하였다.

2022 항저우패러게임에서 체스는 이렇게 등급이 분류된 선수들이 스탠다드 체스 남자개인, 여자개인, 단체, 래피드 체스 남자개인, 여자개인, 단체의 6개 종목에서 실시된 총 24개의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24개를 놓고 경쟁했다. 반면, 애초에 금메달 3개만이 주어졌던 바둑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와 신체장애가 하나로 묶여서 치러졌고, 결과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 채 신체장애 선수들끼리의 경쟁이 되었다. 신체장애의 경우 최소장애만 인정이 되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부터 한쪽 다리의 장애나 한쪽 팔의 절단 장애 등 장애유형이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를 치렀다.

3. 장애인바둑 등급분류

3.1. 장애인체육의 사회적 의의

과거 스포츠는 많은 나라에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다. 당연히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선수의 삶의 질보다는 성적이 중요한 가치였고, 엘리트 중심의 국가지원, 과도한 경쟁, 경기력 중심의 체육 정책 등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경제와 교육 수준의 향

23) 주 21의 APC Chess Rules

상으로 점차 스포츠의 목적이 개인의 즐거움,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장애인체육은 치료나 재활과 같은 수단적 목표에서 선수 개인의 웰빙, 건강, 자아실현 등의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24).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운동 목적은 건강 및 체력관리 82.9%, 재활치료 1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5).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이라는 참여자의 특징으로 인해 비장애인체육과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령대별 체육보급보다는 장애유형별 체육보급이 더 절실하다.26). 같은 원인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심한데,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49.9%이고, 50대 이상의 장애인은 무려 75%이다. 고령의 장애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으로 나뉘어진다27). “고령화된 장애인”은 젊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장애로 인한 차별을 오랜 세월 받아왔으며,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면서 장애와 노년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회적, 신체적 주변화를 경험한다. 한편 “고령 장애인”은 노인성 장애인으로 생리학적 기능 저하로 인해 노년이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된 사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 등을 말하며, 이들은 비장애 노인이나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건강, 돌봄, 주거, 소득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이른다.

또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생활 만족과 건강 등 삶의 질 관련 지표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의 15.7%에 비해 62.2%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70%나 된다28). 때문에 엘리트 선수가 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건강 및 체

24) 조경환, “스포츠복지를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2021.

25)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21.

26) 조재훈,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9권 제4호, 2021.

27) 김최환, “노년 장애인 스포츠활동지원 사각지대”, 에이블뉴스, 2022.02.10.

28)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력, 재활 등이 스포츠활동 참여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 더하여, 장애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화로 인한 기능손실의 예방과 재활 등이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문제는 노년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7.6%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65~74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감소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도 2016년 56.8%에서 2021년 51.0%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우려 사항이다²⁹⁾. 장애인의 빈곤율,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구의 빈곤율은 전체 국민의 빈곤율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을 보면,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 변화가 빈곤율 추이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고령화는 2010년대에 뚜렷하게 진행됐는데, 장애인 중 여성 노인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 노인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5%로 증가했다. 비노인 장애인보다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이 더 높아서 연구진은 장애인 고령화가 장애인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고 봤다³⁰⁾. 생활 조건의 이러한 하락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장애인체육의 경우는 체육장비나 기자재가 고가이거나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교육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개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비, 장소,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³¹⁾.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는 대부분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된다³²⁾는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용 경기장이나 합숙시설, 코치진, 교육자 등이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장애인 스포츠활동의 이러한 고비용은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싼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장애인이 용기를 내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부속한 체육시

29) “노인빈곤율 OECD 3배 한국,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고용율 높였다”, 세계일보, 2024.02.19.

30) “장애인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시장소득 빈곤율 늘었다”, 경향신문, 2023.09.04.

31) 조재훈, 앞의 논문.

32) 조경환, 앞의 논문.

설은 개소수가 부족하여 특정 장애인만 이용하는 형편이다³³⁾.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의 경우에도 스포츠 비참여율이 참여율보다 훨씬 높는데³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스포츠활동을 위한 정책과 함께 이러한 비참여장애인을 생활체육현장으로 유인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체육은 개인의 욕구충족, 건강관리의 차원을 넘어 참가자들의 사회인으로서의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9년에 ‘혼자 이동하기 어려워서’(3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부족해서’(17.9%), ‘거리서 멀어서’(12.9%) 등이었고³⁵⁾, 2023년에도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9.9%), ‘시간이 부족해서’(19.0%),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순이었다³⁶⁾. 장애인들의 이러한 이동 곤란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생활체육 참여의 어려움은 장애인들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고, 이것이 다시 장애인들의 열등감과 소극적인 생활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것이 다시 장애인들의 긍정적 삶의 에너지로 바뀌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장애인들끼리의 체육활동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기회와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2. 장애인바둑 등급분류의 고려 사항들

서양에서 시작된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한 역사가 오래된 체스와는 달리 바둑은 스포츠로 인정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중국에서는 1956년 중국위기협회(中國圍棋協會)가 창설될 당시부터 바둑을 체육 종목의 하나로 인정하고 육성하였

33) 오완석, “장애인 체육으로 통합사회 가치 실현”,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4호, 2022.

34) 위의 논문.

35)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2020.

36)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2024.

으나, 한국에서는 21세기 초반에야 비로소 대한바둑협회가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2009년에야 정가맹단체로 승인되었다. 한편, 또 다른 바둑 강국인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도 체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2022 항저우패러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이 가장 먼저 바둑을 체육으로 인정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바둑협회가 조직되거나 장애인바둑대회가 열린 적도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국제대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따라서 장애인바둑에 관한 어떠한 국제 공인의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국장애인바둑협회가 1999년 7월 25일에 창립되었으며, 2003년 8월 22일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인정단체로 등록되었다. 전국장애인바둑협회(현 대한장애인바둑협회)는 장애인들에게 바둑을 통하여 사회에 접근성 및 대인관계에 친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추홀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를 24회째 인천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과 분당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국장애인바둑대회를 2017년까지 15회 치렀다. 또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22회부터 25회(2008년)까지 기능경기대회의 바둑 부문과 많은 전국의 지역장애인바둑대회를 주관 및 주최하고 있으며, 전국장애인체전 32회와 33회, 그리고 35회에 전시종목으로 참가하였다. 산하지부로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2019년 현재) 지역 장애인바둑협회가 활동하며 지역의 장애인 애기가들에게 긍정의 효과를 심어주고 있다³⁷⁾.

이처럼 대한장애인바둑협회가 25년 전부터 설립되어 현재 인정단체이며,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 대한장애인바둑협회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는 국가가 정하는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른 분류도 없다. 이번 2022 항저우패러게임에서 최소장애기준을 충분히 갖춘 김동한 선수의 경우에도 한 번도 등급분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등급분류 통과에 자신하지 못하

37) 대한장애인바둑협회 홈페이지, <https://jangbaduk.modoo.at/>

여 대회 준비에 애로사항을 겪었고, 애초에 선수선발 당시 최소장애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신장장애 선수나 청각장애 선수를 선발하는 예도 있었다. 각각 차순위 선수와 후보선수를 대신 보내야 했을 때에도 등급분류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선수를 출전시켜 현지 등급분류심사에서 다음번 국제대회 참가 시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출전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장애인바둑의 등급분류는 이처럼 이제 막 그 첫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따라서 의료적, 혹은 기능적인 등급분류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의 논의에 앞서 어떤 것이 기준 수립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5년에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목적³⁸⁾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 유형별 체육 단체 및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위선양이나 국제 스포츠 교류 등의 목적은 장애인 개인의 웰빙, 건강, 자아실현 및 사회인으로서의 자신감 획득 등의 새로운 장애인체육의 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등급분류의 문제는 국제적인 장애인스포츠 이벤트에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1차적인 연구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스포츠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대회에서의 메달획득이 아닌 이상, 등급분류도 해당 종목과 세부경기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장애인들의 웰빙, 건강,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심지어 엘리트 선수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량을 펼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장애를 극복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것도 해당 종목과 세부경기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38)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목적, https://www.koreanpc.kr/ibuilder.do?menu_idx=22

을 위함이지, 절대적인 경기결과와 우수성을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특정 스포츠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훈련과정이나 종목에의 접근성 등 간접적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스포츠활동을 통해 극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C는 8가지의 신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총 10개의 카테고리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³⁹⁾. 체스는 지적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종목은 신체장애와 시각장애와 더불어 지적장애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다. 사이클이나 트라이애슬론의 경우는 신체장애 선수와 함께 시각장애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이때 B1, B2, B3의 선수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출전하며 비장애인 파일럿과 함께 출전한다. 승마는 신체장애와 함께 시각장애 선수들이 출전하지만, B1(전맹)의 경우는 두 팔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거나, 모든 사지에 보통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왜소증 등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고, B2(약시)는 그보다 약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과 경기를 한다. 5인제 축구나 골볼, 유도처럼 시각장애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경기도 있고, 조정처럼 시각장애 선수와 신체장애 선수가 한 대의 배에 함께 타고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탁구는 신체장애와 지적장애 선수들만 출전하고 시각장애는 참가하지 않으며, 태권도는 오직 팔에 장애가 있는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종목은 그 종목의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를 통해 경기에서의 공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스포츠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바둑의 등급분류는 이처럼 경기에서의 공정함과 동시에 경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웰빙, 건강,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기회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스포츠로 분류되기 시작한 e스포츠에서는 장애인e스포츠 등급분류를 진입단계, 성장단계, 전문단계의 3단계의 과정을 거

39) IPC Classification System

쳐 수립하자고 제안하고 있어⁴⁰⁾ 바둑의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도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진입단계는 현실적으로 선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계로 대중화의 초기단계이며 모든 장애인들에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부기관의 신체적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여기서 내부기관의 장애인, IPC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및 요루, 간질 등의 장애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등록 장애인의 5% 정도를 차지한다. 성장단계는 대중화의 틀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선수확보가 가능한 단계로 지속적으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e스포츠 등급분류 관련 체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단계다. 마지막 전문단계는 장애인 e스포츠 등급분류 체계의 완성으로 안정적으로 등급분류 시스템이 작동하며 조직, 선수, 저변확대의 완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전제로 위의 연구는 총 8개의 세부 등급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IPC에서 인정하는 신체장애(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와 더불어 청각장애와 내부기관 장애, 자폐성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3단계의 전략은 바둑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장애인바둑협회가 25년 전부터 설립이 되어 전국대회를 치러왔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진입단계에서의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스포츠의 엘리트 선수들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 선수로 발탁되고 육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불문하고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바둑 인구가 한국의 몇 배인 중국보다 장애인들이 바둑을 접하고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많았던 한국에서 더 우수한 선수가 배출된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0) 한국콘텐츠진흥원, “장애인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등급분류 연구”, Kocca 연구보고서, 2011.

물론 아직까지 패럴림픽이나 아시안패러게임의 정식종목이 된 적이 없는 e스포츠와는 달리 바둑은 이미 아시안패러게임을 치렀고, 비록 개최국 중국에조차 장애인바둑협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바둑 자체의 역사나 저변으로 볼 때 초기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한 e스포츠 등급분류에 관한 연구가 2011년에 보고된 것이고,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은 2009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인정단체가 된 후 2022년에 준가맹단체로 승격을 한 것을 감안하면⁴¹⁾, 어쩌면 e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는 초기단계를 지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제시할지도 모르겠다.

한편, 바둑은 비장애인의 경우 아시안게임과 같은 스포츠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랜 세월 프로제도가 존재해 왔고, 각국의 프로리그나 세계기전도 활성화되어 있어 선수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전문단계로 보아 무방하지만, 장애인바둑의 경우에는 이번 2022 항저우 패러게임이 첫 출전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바둑협회나 대회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전문단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또한, 앞으로 언제 또다시 아시안패러게임에 바둑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의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게 되면 공연히 바둑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던 많은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바둑에 있어서는 성장단계 정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과 2022 항저우패러게임에서 바둑에 적용되었던 APC체스등급분류규정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듯하다. 먼저, 2022 항저우 패러게임에서는 신체장애와 시각장애를 나누고, 시각장애를 다시 세 등급으로 분류한 체스와는 달리 바둑에서는 신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구별 없이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경기를 해야 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적어도 두 부분은 분리되어야 옳다고 본다. 다만, 시각장애 내에서 체스와 같이 3단계로 나누는 경우 메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담이 크고, 현재의장애인

41) “장애인체육회·콘텐츠진흥원, ‘장애인e스포츠활성화’ 업무협약”, 에이블뉴스, 2023.03.17.

바둑 보급 상황을 생각할 때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부 종목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신체장애의 경우 최소장애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바둑의 특성상 사지의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는 바둑을 두는 데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많은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에서는 내부기관 장애나 청각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 등도 모두 포함을 시켰지만, 체스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한다.

3.3. 청각장애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IPC에서 인정하는 장애에는 청각과 내부기관 장애, 그리고 자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장이나 간, 호흡기 등의 장애는 영구적인 장애라기보다는 질병으로 인식되어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각의 경우 장애의 확인이 쉽지 않고, 신체운동의 경우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서 수영, 태권도, 역도, 유도 등의 종목에 청각장애를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기관 장애나 자폐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장애인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에도 내부기관의 장애는 장애인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할 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자폐를 포함한 정신지체의 경우는 국제정신지체인스포츠연맹(INAS-FID)가 후원하는 정신지체인 세계선수권대회와 스페셜올림픽이 열린다.

이처럼 IPC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에는 오직 신체장애와 시각장애, 그리고 소수의 지적장애만 포함되는데, 굳이 청각장애를 따로 논하는 이유는 체스나 바둑과 같은 마인드스포츠 분야의 특수성 때문이다. 청각장애는 앞서 설명한 대로 데플림픽 등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 청각장애인들이 이

처럼 패럴림픽과 별도의 대회를 열게 된 것은 청각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운동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실제로 청각장애가 있는 선수들 중 일반 스포츠팀의 일원인 경우도 많고, 데플림픽의 종목들은 패럴림픽과는 달리 경기 규칙이나 장비 등에서 일반스포츠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⁴²⁾. 다시 말해, 청각장애인 선수들은 신체적 능력이나 실행하는 스포츠 종목이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패럴림픽에서 배제된 이와 같은 이유를 바둑이나 체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바둑의 경우(체스도 마찬가지) 아무리 심각한 신체장애가 있어도 돌을 놓을 위치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심판이 대신 착수를 하거나 시계를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능력 장애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바둑협회 소속의 많은 지체장애 선수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반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IPC가 장애인바둑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을 패럴림픽 등에서 배제한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지체장애 선수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패럴림픽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각장애인 바둑 부분만 남게 될 수 있다.

역으로, 체스나 바둑과 같은 두뇌스포츠는 신체를 사용하는 여타의 종목들과 달리 청각장애가 해당 종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장애일 수 있다. 사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운동에 있어서도 지도자와의 소통문제, (지도자의)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성 부재, 청각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 시설 및 서비스 부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정보 부족 등이 이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⁴³⁾. 이처럼 장애인스포츠에 있어 장애유형에 맞는 지도법과 훈련법은 어느 종목에서나 중요한 문제지만, 신체의 움직임 등으로 지도나 교정이 가능한 신체운동과 달리 바둑은 많은 것을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각장애는 결코 가벼운 장애가 아니다. 이미 엘리트 선수가 된 경우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바둑에

42)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 『장애인스포츠』, 2nd ed., 최승권, 한동기, 강문주, 김권일, 박병도, 이재원 공역,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p175, 2005.

43) 김국, 김지태, 정서호, “청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62권 제1호, 2023.

입문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도자와의 소통,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 혹은 비장애 선수들과의 대국 후의 복기, TV나 온라인 매체에서 중계를 감상하는 등 많은 경우에 신체운동보다 훨씬 더 큰 제약이 따른다. 바둑을 지도하는 현장에 수어통역사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바둑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체계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등급분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체급이나 성별에 구분이 있듯이,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와 그렇지 않은 장애는 구분되어 경기를 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경기를 하는 것은 근력 등에서 공정한 경기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포츠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거나 사회적 인식이 여성의 스포츠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등의 이유에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라면 바둑과 같은 두뇌스포츠의 경우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애(예를 들어 시각장애)와 그렇지 않은 장애(예를 들어 신체 및 청각장애)는 구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앞에서 장애인체육의 사회적 의의를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은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과 행복한 삶,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고, 이미 장애인체스에서 시각장애와 함께 신체장애를 포함하였으므로 신체장애를 등급분류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외라고 생각된다. 한편, 두뇌스포츠의 경우 절단장애 등의 최소장애기준보다 청각장애가 경기력 또는 교육 등의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더 작지 않으므로, 최소장애기준에 청각장애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신체장애 부분에 청각장애를 포함시켜 시각장애와 구분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얻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신체장애 선수들에게 더 높은 경기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이상으로 장애인바둑의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기준이 현시점에서 등급분류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바둑의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미 신체장애인이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서 최소장애기준만 갖추면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체스와 같이 바둑에도 시각장애부분을 추가해 줄 것, 그리고 시각장애부분은 굳이 체스처럼 3등급으로 나누어 경기하지 않고 전맹과 약시를 통합하여 경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IPC가 인정하는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장애요건에는 청각장애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체스나 바둑과 같은 두뇌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장애와 청각장애를 하나의 카테고리 하에 경기를 여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사실 아시안게임과 함께 아시안패러게임이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이었고, 항저우아시안패러게임이 겨우 4회째였다는 사실, 그리고 체스와 바둑이 포함된 것이 사상 최초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 종목에서 등급분류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개최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도 전국적인 장애인바둑협회가 없는 실정이며,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바둑협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대회에 불참하였으니 등급분류는 물론이고 대회 운영방식부터 경기규칙까지 모든 것이 처음일 수밖에 없었다. 개최국 중국의 바둑협회와 항저우기원이 바둑에서는 사상 최초로 열리는 국제장애인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언제 다시 개최될지 모르는 국제적 장애인바둑대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그러한 준비사항들 중 중요한 일부이지만,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의 부족, 어린 시절 스포츠 경험의 결핍, 지도자와 프로그램 부족, 스포츠 시설 미

비,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한계 등 스포츠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44).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을 개최하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갑자기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인식이 실질적인 결실이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인 2005년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활동에 대해서도 사실 2015년에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시각장애인 스포츠종목들이 언론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45). 데플림픽의 경우 하계는 1985년 LA대회부터 참가하였지만, 동계 패럴림픽은 2015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고, 2019년에 첫 메달을 획득하였다46).

장애인체육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바둑협회가 없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유일한 예외가 한국이고,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바둑협회가 있는 일본이 또 다른 예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둑이 많이 보급되고 활발하게 두어지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지에 장애인을 위한 바둑협회를 설립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렇게 조직된 각 지역의 장애인바둑협회가 모여 국제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국제바둑연맹(IGF)에 가입된 국가는 75개국 이 넘고, 그중에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의 국가들도 많지만, 바둑은 여전히 동아시아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단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에 장애인바둑협회들 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주 간단한 등급분류의 기준을 제안하기는 하였지만, 국제장애인바둑협회와 같은 조직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등급분류기준은 물론이고 장애인바둑만의 경기규칙, 대회운영규칙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

44) 위의 책, p15.

45) “‘눈이 아닌 머리로’ 시각장애인 체스”, 에이블뉴스, 2015.05.04.

46) 나무위키, 데플림픽.

제장애인바둑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번 아시안패러게임은 2026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다. 비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는 체스와 바둑 모두 정식종목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황이다. 패러게임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바둑이나 체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국제적인 장애인바둑단체가 설립이 된다면 그 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패러게임에 바둑을 추가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더불어,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와 동계데플림픽에는 체스가 이미 정식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시아 이외의 지역들의 바둑협회와 함께 바둑을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와 동계 데플림픽에 추가하는 운동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런 모든 움직임에 작은 시발점이 되길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논문/기고/저서>

- 김국, 김지태, 정서호, “청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62권 제1호, 2023.
- 김민창, 홍석만, 한민규,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체계 고찰 및 국내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통권 제58호, 2019.
- 김최환, “노년 장애인 스포츠활동지원 사각지대”, 에이블뉴스, 2022.02.10.
- 나은우,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한 첫 관문”, <스포츠과학>, 2009.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2024.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21.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2020.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 오완석, “장애인 체육으로 통합사회 가치 실현”,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4호, 2022.
- 조경환, “스포츠복지를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15권 제5호, 2021.
- 조재훈,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9권 제4호, 2021.
- 한국콘텐츠진흥원, “장애인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등급분류 연구”, Kocca 연구보고서, 2011.
- 한민규, 『장애인스포츠론』, 대한미디어, 2018.
-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 『장애인스포츠』, 2nd ed., 최승권, 한동기, 강문주, 김권일, 박병도, 이재원 공역,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p175, 2005.

<규정>

Asian Paralympic Committee Chess Classification System

IBSA Medical Procedures, IBSA Classification

IPC Classification System

<웹문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식블로그, 데플림픽.

나무위키, 데플림픽.

[네이버 지식백과] 패럴림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장애인바둑협회 홈페이지, <https://jangbaduk.modoo.at/>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목적, https://www.koreanpc.kr/ibuilder.do?menu_idx=22

위키백과, 패럴림픽.

Wikipedia, International Braille Chess Association.

Wikipedia, Chess at the 2017 ASEAN Para Games.

Wikipedia, Chess at the 2023 ASEAN Para Games.

<https://ipcachess.org/about-us/>

<https://chessdeaf.org/member-federation/>

<기사>

“공정한 경쟁을 위해 평등한 조건을 갖추다 ‘스포츠 등급분류’,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2023.03.20.

“국내서 첫 시행한 ‘장애인 스포츠 국제등급분류심사‘는?”, 무카스미디어,
2023.04.20.

“국제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 예산 확대 시급”, 에이블뉴스, 2022.10.14.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말라위에서 등급분류 추진”,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블로그, 2022.12.15.

“노인빈곤율 OECD 3배 한국,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고용율 높였다”, 세계일보, 2024.02.19.

“눈이 아닌 머리로’ 시각장애인 체스”, 에이블뉴스, 2015.05.04.

“장애인AG 첫 관문 등급분류심사 긴장감 역력”, 에이블뉴스, 2018.10.04.

“장애인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시장소득 빈곤율 늘었다”, 경향신문, 2023.09.04.

“장애인체육회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 필요”, 에이블뉴스, 2017.10.18.

“장애인체육회·콘텐츠진흥원, ‘장애인e스포츠활성화’ 업무협약”, 에이블뉴스, 2023.03.17.